

#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제 안 설 명

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 형 재 의원

안녕하십니까? 김 형 재 의원입니다.

김원태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지난 4월 3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면,

「대한민국국기법」 제8조제3항에 따르면 대형건물, 공원, 경기장 등 많은 사람이 출입하는 장소에는 가능한 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

도록 되어 있는데, 시민들의 애국심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광화문광장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. 이에 광화문광장 및 서울광장, 공원, 경기장 등 공공장소에 가능한한 연중 국기를 게양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.

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, 모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